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 · 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1,034,400,000 | 31,032,000 |
| 일반회계 | 864,000,000 | 25,920,000 |
| 특별회계 | 170,400,000 | 5,112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47,700,000 | 1,431,000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24,700,000 | 741,000 |
|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23,000,000 | 690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122,700,000 | 3,681,0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4,367,000 | 131,010 |
| 의료보호비특별회계 | 2,355,000 | 70,650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| 971,000 | 29,130 |
|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| 3,365,000 | 100,95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843,000 | 25,29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7,952,000 | 538,560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| 6,032,000 | 180,960 |
| 대지보상특별회계 | 308,000 | 9,240 |
|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| 74,271,000 | 2,228,130 |
|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11,900,000 | 357,000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336,000 | 10,080 |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 · 세출예산 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,319,458천원으로 한다.